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5. 5. 16.(금)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심차단서비스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 여신거래안심차단 신청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도 구분하여 차단
- 안심차단서비스(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신청주체를 본인 외 가족으로 확대
- 상호금융권의 모바일 신청채널 확대 예정

5.12일 기준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누적 가입자수는 각각 총 255만명, 204만명*으로 안심차단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SKT 해킹사고 이후(4.22.~5.12.)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수가 각각 212만명, 188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청장년층의 명의도용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우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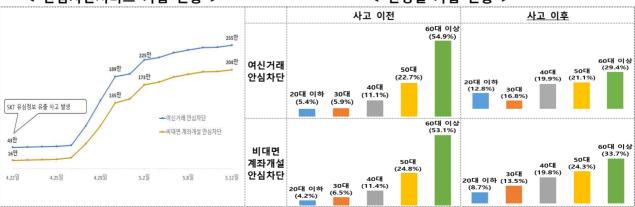
* 약 147만명은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를 모두 가입하여 이용

※ 안심차단 서비스 개요

-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 대출 등 개인 명의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24.8.23일)
- ②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범죄조직의 수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25.3.12일)

<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현황 >

< 연령별 가입 현황 >



■ 안심차단 서비스 개선의 주요 내용

최근 안심차단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서비스 시행이후 소비자의 제도 개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안심차단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하였다.

우선,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항목이 차단항목의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시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카드 신규 발급, 카드론등 모든 여신거래를 일괄 차단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널리 사용하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제한되어 서비스 가입시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금번 개선으로 소비자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의 차단 여부를 직접 선택(Opt-out)할 수 있게 되어 이용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가입자도 선택사항으로 변경 가능 (붙임1 참조)

둘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안심차단서비스(여신거래, 비대면계좌 개설)를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은행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위임받은 가족도 서비스를 신청·해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이다수 제기되었다. 안심차단서비스 신청 주체가 위임받은 가족까지 확대됨에따라 서비스 이용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 대리 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 손자, 사위, 며느리

마지막으로, 농협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모바** 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된다.

* 농협조합(5월말 예정), 새마을금고 등 순차적으로 확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금융 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서기관	김영민 (02-2100-2573)
	금융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유은지 (02-2100-2974)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정재승 (02-3145-8150)
	금융사기대응단	담당자	팀 장	김태근 (02-3145-8130)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붙임1

서비스 관련 주요 질문 및 답변

- 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의 안심차단 선택사항 변경 관련
 - 1.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기존 가입자도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나요?
- □ 기존 안심차단 가입자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 차단이 유지됩니다.
 - 다만, 기존 가입자도 5.16일 이후 안심차단 서비스를 재신청하여 신용카드 신규 발급 차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 신용카드 만기도래로 인한 갱신, 분실 교체시 안심차단이 적용되나요?
- □ 신용카드 갱신 및 교체, 체크카드 발급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만 적용 대상)
- 나. 임의대리인 서비스 신청 허용 관련
- 1. 임의대리인의 안심차단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 □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 불가)
- 2. 임의대리인이 안심차단 신청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 □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서류***가 **필요**합니다.
 -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3. 임의대리인이 안심차단을 신청한 경우, 해제는 누가 할 수 있나요?
- □ 안심차단을 **신청한 임의대리인** 또는 **본인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붙임2

안심차단서비스 개요 및 가입방법

- □ (개요)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사전에 특정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모든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수시입출식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일괄 차단
 -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카드 발급, 카드론, 할부·리스, 서민대출 등 모든 비대면 여신성 금융거래를 일괄 차단
 - 단, 신용카드 발급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안심차단 적용 여부를 별도로 선택 가능
- □ (가입·해제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
 - ** 향후 농협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예정
 - 서비스 해제는 기존 거래 여부와 관계 없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가능
 - 서비스를 **해제하면 곧바로** 해당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필요한 금융거래 이후에 **서비스**에 **재가입**하는 것도 **가능**
 - (참고) 안심차단 신청화면 예시(은행 모바일 앱)

참고

안심차단 신청화면 예시(은행 모바일 앱)

